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8가합566176 판결 [주식매매대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한승철, 정미희

피 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용우, 이병정

2. C

변론 종결 2019. 11. 29.

판결 선고 2020. 2. 7.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961,328,369원 및 그 중 17,0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1.부터 2020. 2. 7.까지, 921,328,369원에 대하여는 2016. 8. 20.부터 2019. 1. 4.까지 각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961,328,369원 및 그 중 17,040,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11.부터, 921,328,369원에 대하여 2016. 8. 2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0.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제선, 제강 및 압연제의 생산과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주주들로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C은 대표이사, 피고 B은 사내이사이던 자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12. 27. D와, D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 1,600,000주(액면가액5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주당 10,650원, 총 인수가액 17,04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신주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당시 D의 총 발행 주식 중 35%(4,550,259주)를 보유하던 피고C 및 11.2%(1,455,672주)를 보유하던 피고 B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주간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과 이 사건 주주간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주간계약서

아래 당사자들은 2011. 12. 27.자로 본 주주간계약(이하 '본계약')을 체결한다.

1. 원고(이하 '투자자')
2. D의 주요주주인 피고 B, 피고 C(이하 '주요주주')

제2조 주식의 처분 제한

투자자(원고)는 실행일로부터 5년간 보유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회사 또는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계열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3. 중대한 계약위반의 경우

제4조 주식매도선택권(Put Back Option)

투자자는 실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언제든지 또는 회사가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회사에 서면통지함으로써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전부를 주요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수 있다.

1 행사가격

행사가격은 본건 신주의 1주당 인수가격으로 한다.

2 행사시점

실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언제든지 매도선택권의 행사가 가능하며,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때에는 투자자가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3 매매대금의 지급 및 주식 이전

매도선택권 행사의 통지가 주요주주 등에게 도달한 때에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전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며, 당사자들이 합의한 날(합의가 없을 경우 매도선택권 행사의 통지가 주요주주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로 함)에 매매대금의 지급 및 주식 이전을 상호 이행하기로 한다.

제5조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1 내용

회사의 주요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는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당해 주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를 보유하고, 투자자가 본건 신주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요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지정하는 자는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당해 주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를 가진다. 단, 우선매수권은 우선매수권 행사일 현재 투자자가 본건 신주를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2 절차

제1항의 경우, 주식을 매도하려는 당사자(이하 '매도자')는 양도대상 주식의 수량, 주당 매각제안가격, 잠재적 양수인(들)의 성명 및 주소 등 양도제안의 주요 내용을 상대방(이하 '우선매수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이하 '양도통지')하여야 하며, 우선매수권자는 그러한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영업일 이내(이하 '우선매수기간')에 양도통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양도대상 주식 등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매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위반의 효과

매도자가 본 조에 위반하여 우선매수권자에게 우선매수권 행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거나, 우선매수권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양도대상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매도자는 (i) 해당 주식의 액면금액 합계 또는 (ii) 해당 주식에 대하여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 중 큰 금액의 1.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별로 우선매수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진술과 보장

3 각 주요주주는 투자자에 대하여 본 계약상 진술과 보장 및 의무 등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다. 주식매도선택권 행사 통지 및 주권의 공탁

1) 원고는 2018. 6. 7.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전부에 대한 주식매도선택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8. 6. 11.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18. 10. 1. 피공탁자를 피고들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년증제8호로 이 사건 주식 전부를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식매도대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원고의 2018. 6. 7.자 주식매도선택권 행사통지에 따라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주식 전부에 대하여 인수가액을 매매가 액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식매매대금 17,0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반대의무의 변제제공으로서 이 사건 주식을 공탁하여 피고들을 지체에 빠뜨린 날인 2018. 10.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2.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주식 매도대금 지급기일인 매도선택권 행사의 통지가 피고 B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8. 7.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주주간계약에서는 주식매도선택권 행사통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식 전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주식매매대금의 지급과 주식 이전을 상호 이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와 원고의 주식 이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가 주식 이전의무의 이행제공을 할 때까지 피고들은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데, 원고가 이 사건 주식 공탁일 이전에 피고들에게 주식의 이전의무에 대한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주장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광양시로부터 광양시가 조성한 E산업단지의 공장부지 분양협조 요청을 받자 D에게 E산업단지 내 공장부지를 분양받도록 요구하였고, D는 2010. 12.경 순천공장을 준공하여 추가적으로 공장부지를 매수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원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납입한 신주인수대금으로 공장부지를 분양받게 되었다.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D가 E산업단지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원고로서는 광양시의 요청을 수용하면서도 F에서 생산한 철강을 D에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는 이익을 얻은 반면 주시가격 하락등으로 인한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피고들에게 전가되었고, 이후 D의 경영악화와 이에 따른 코스닥시장 상장폐지로 인해 D 주식가치가 전무하게 됨으로써 결국 피고들은 개인이 부담할 수 없는 규모인 부지매입자금 전액의 상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가 피고들의 무경험과 경솔을 이용하여 체결한 D 및 피고들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이므로,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4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들이 공박, 경술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로부터 170억 원의 토지매수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원고에게 주식매도선택권을 부여한 것이 D와 그 대주주인 자 경영진인 피고들에게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는 보이지 않으며, 이후 대주주 및 경영자의 지위에 변경이 있었다거나, D의 경영 악화로 상장폐지가 됨으로 인해 피고들이 당초 예상할 수 없었던 규모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의무부담행위가 있는 후의 사정 등을 이유로 민법 제104조를 들어 의무부담행위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주식매도선택권 행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주식매도선택권 행사는 사실상 D에 지원된 공장부지 매입자금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구하는 것인데,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들 모두 개인인 피고들이 170억 원 전액의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투자금 전액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거나, 그 금액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다거나, 피고들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신의칙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들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약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6,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2016. 1.경부터 2016. 4.경까지 D 발행주식 377,000주를 코스닥시장을 통해 708,714,130원에 매도한 사실, 원고가 2016. 8. 1. 피고 B에게 '우선매수권조항 위반에 따른 위약벌금을 청구하고자 하니 주식처분 상세내역 및 위약금 변제계획을 2016. 8. 19.까지 회신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5조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이 매도한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377,000주 × 500원 = 188,500,000원)과 매도가액(708,714,130원) 중 큰 금액의 1.3배인 921,328,369원(= 708,714,130원 × 1.3) 상당의 위약금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위약금의 이행 최고일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8.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들에게 최종송달된 2019. 1.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D의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한 자는 피고 C이고, 피고 B은 보유주식의 상당 부분을 원고의 동의를 받아 매각하여 남은 지분은 0.89%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우선매수권의 행사 통지를 강제하여 얻어지는 이익이 없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도 전혀없다. 그런데도 피고 B에게 위약벌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그전부 또는 일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이다.

2) 판단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2627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1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은 피고들에 대한 위약벌의 부과만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조건과 내용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약벌도 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피고들이 D에 대한 경영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17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였는데, 이 사건 주주간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은 D 총 발행주식의 11.2%(피고 B의 가족 보유분을 포함하면 23.72%)를 보유하고 있었고, 전체 3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의 1인이었으며, 생산과 조업 부분을 총괄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B이 지분을 유지하면서 경영상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과 관계없이 계약당사자가 약정의 이행에 나아가도록 압박을 가하고 위약하였을 때에는 사적인 제재를 가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주간계약에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기회를 주지 않았을 경우 주식가액의 1.3배를 위약벌로 지급하기로 한 것을 두고 상대방이 얻는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상범, 판사 박현이, 판사 김재승